유류세 지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류세 지원]

유류세를 지원받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유류세 지원』 콘텐츠는 자동차, 선박 및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계 관련 유류세 지원 뿐만 아니라 유류세 감면 또는 환급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유류세 지원 1
1. 유류세 알아보기 4
1.1. 유류세 이해하기 4
1.1.1. “유류세”란? 4
1.1.2. 탄력세율 및 조정세율의 적용 7
2. 자동차 관련 유류세 지원 등 9
2.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9
2.1.1. 유가보조금 지원 등 9
2.1.2. 유류세의 감면 등 14
2.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15
2.2.1. 유가보조금 지원 등 15
2.3.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19
2.3.1.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19
3. 선박 관련 유류세 지원 등 22
3.1.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22
3.1.1. 유류세 보조금 지원 등 22
3.1.2. 유류세의 감면 등 23
4. 농·축산·임·어업용 기계 관련 유류세 지원 26
4.1. 농·축산업 등에 대한 유류세 감면 26
4.1.1. 농업·축산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26
4.2. 임업·어업 등에 대한 유류세 감면 29
4.2.1. 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29
4.2.2. 어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32

1. 유류세 알아보기

1.1. 유류세 이해하기

1.1.1. “유류세”란?

개별 법령에 따른 유류세의 구성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유류세

▪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대상		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휘발유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3.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함)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함	리터당 475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경유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4.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 1.~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리터당 340원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유류세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대상	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 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	킬로그램당 20원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위의 프로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	킬로그램당 252원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함)는 킬로그램당 60원	킬로그램당 12원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리터당 90원

「교육세법」에 따른 유류세

▪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

과세표준	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5%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30%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 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5%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위의 프로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지방세법」에 따른 유류세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36조제1항).

과세대상	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	3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판매부과금

▪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과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제2호·제3호).

부과대상	부과금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급휘발유	리터당 36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탄	톤당 62,283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톤당 0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

> ※ 이 콘텐츠에서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 감면, 환급 등 "유류세 지원"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1.1.2. 탄력세율 및 조정세율의 적용

교통·에너지·환경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및 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품목	기본세율	탄력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리터당 529원(다만,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리터당 375원(다만,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81원)

개별소비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및 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제7항 본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 제6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품목	기본세율	탄력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리터당 63원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
프로판	킬로그램당 20원	킬로그램당 14원
부탄	킬로그램당 252원	킬로그램당 275원(다만,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06원)
천연가스	킬로그램당 12원(발전용)	열병합 발전용 킬로그램당 8.4원 일반 발전용 2026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킬로그램당 60원(일반용)	킬로그램당 42원(일반용)
부생연료유	리터당 90원	리터당 63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는 조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및 세율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다음의 조정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6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품목	기본세율	조정세율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2. 자동차 관련 유류세 지원 등

2.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2.1.1. 유가보조금 지원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란?

▪ "유가보조금"이란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것으로서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제1호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3조제1호).

-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연동보조금**
-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2026. 9. 1.〉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 및 천연가스(CNG)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함)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제3호).

▪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다음의 연료에 대해 지급됩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제1항 및 제2항).

-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경유
-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 다만,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를 유로(EURO)-6 경유 택시로 전환하는 일반형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는 2015년 9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되, 매년 1만대로 제한됩니다.

▪ 유가연동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 지급됩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제3항).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제1항 및 제3항).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油類)일 것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을 것
5.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의 신용카드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자로 한정)가 발행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연료구매카드”라 함)로 유류를 구매할 것(다만,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받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함)
8. 운송사업자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 “연료구매카드”란?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제1항).

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방법

▪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제4항 본문).

※ 다만, 연료구매카드가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유류구매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제4항 단서).

▪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

구분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개인택시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주유를 받고 연료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운송사업자의 면허(양수·상속·합병 및 대리운전을 포함) 개시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나. 운송사업자가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재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 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정지일로부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연료구매카드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 라.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유료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 마. 주유기·카드단말기 고장, 연료구매카드 훼손, RFID 시스템 및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오류 등 일시적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 2.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해야 함
버스 및 일반택시	1. 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결제카드로 거래금액을 결제해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버스 운송업체가 RFI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가주유·충전하는 경우 나. 운송사업자의 면허(양수·상속·합병 및 대리운전을 포함) 개시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 운송사업자가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재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라. 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정지일로부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연료구매카드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 마.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유료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 바. 주유기·카드단말기 고장, 연료구매카드 훼손, RFID 시스템 및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오류 등 일시적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 2. 운수종사자가 주유를 받고 택시의 경우에는 거래카드를, 버스의 경우에는 거래카드(일반주유에 한정) 또는 RFID 시스템(자가주유에 한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함

※ 유가보조금의 지급 정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2).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주유·충전한 유종(油種)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란?

▪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란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2016년)에 따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수입·판매 부과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유류세연동보조금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6항 전단 참조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3조제1호가목].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대상

▪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함)가 사용하는 다음의 연료에 대해 지급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6항 전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6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제1항).

-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천연가스(CNG)
-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천연가스(CNG)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

▪ 운송사업자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제1항 및 제3항).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 기준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油類)일 것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을 것
5.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의 신용카드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자로 한정)가 발행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연료구매카드”라 함)로 유류를 구매할 것(다만,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받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함)
8. 운송사업자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방법

▪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제4항 본문).

※ 다만,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유류구매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제4항 단서).

▪ 운송사업자에 대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구분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청구 및 지급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1. 운송사업자는 결제카드로 거래금액을 결제해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버스 운송업체가 RFI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가주유·충전하는 경우 나. 운송사업자의 면허(양수·상속·합병 및 대리운전을 포함) 개시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 운송사업자가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재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라. 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 정지일로부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연료구매카드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 마. 주유기·카드단말기 고장, 연료구매카드 훼손, RFID 시스템 및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오류 등 일시적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 2. 운수종사자가 주유를 받고 RFID 시스템[천연가스(CNG)충전]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함

※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정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3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3).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천연가스 사용분에 대해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충전한 천연가스와 다른 종류의 천연가스 또는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1.2. 유류세의 감면 등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 및 금액

▪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받게 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1항).

감면 방법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함)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2항).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란?

- 택시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에게 면세를 위해 발급받는 유류구매카드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3제1항).

※ 부정 감면 시 제재

-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5항부터 제8항까지).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감면액
2. 위에 따른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6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8항).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유류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개인택시운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2.2.1. 유가보조금 지원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란?

▪ "유가보조금"이란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것으로서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제1호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제1호).

▹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2026. 9. 1.>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

▪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함)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수탁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제3항).

▪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LPG)에 대해 지급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조).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

▪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油類)일 것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충전소·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또는 충전받을 것
5.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 또는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9.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증차한 경우는 제외함)가 구매한 유류에 대해 지급할 것
10. 경유 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적용할 것
11.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말함)을 갖춘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에서 해당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12.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을 것
13.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자동차등록번호·일시·장소·주유량·유종·단가·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것
14.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국가 간 조약·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은 자 또는 차량이 아닐 것

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절차

▪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유류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1조 및 제22조).

> ※ **"유류구매카드"란?**
>
>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에게 발급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제4호 및 제12조).

▪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1조 및 제22조).

구분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유류를 구매하고 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2.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 체크카드의 경우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거래·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마다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외상거래 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 거래내역을 사후 결제(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함) 2. 화물차주가 주유소와 외상거래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거래확인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 후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각각의 주유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직불·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함) 수령 2.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주유 즉시 자가주유카드로 인식된 차량의 주유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카드협약사의 한도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2.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 유류구매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 수령 2.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 유가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제1항).

1.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구입한 유류를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주유업자등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됩니다.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제2항).

※ 화물자동차(개인)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2.3.1.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경형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 및 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인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함)를 소유하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및 부탄(LPG)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1항·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2항).

- 해당 환급대상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환급 금액 및 한도액

▪ 환급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환급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3항 전단).

-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 석유가스 중 부탄(LPG)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3항 후단).

환급 방법

▪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경형자동차 소유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4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5항).

▪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4항 후단).

중고 경형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발급 가능 여부

Q. 중고 경형 승용·승합차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2022. 2. 10),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참조>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여부

Q.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지원 대상인가요?
A. 안내대상자 선정 기간 이후 세대원 변동, 신차 구입 등으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에 기재된 ‘발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2022. 2. 10),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참조>

※ 경형자동차 유류세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부정 환급 시 제재

-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7항).

1.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2. 위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10항).

1.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음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이 정지됩니다.

환급 대상 제외

▪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8항).

유류구매카드의 기능 정지

▪ 환급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이 정지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13항).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 환급대상자가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10항제1호 및 제2호).

3. 선박 관련 유류세 지원 등

3.1.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3.1.1. 유류세 보조금 지원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보조금”이란?

▪ “유류세 보조금”이란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것으로서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해운법」 제41조제2항,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2조제2호 및 제3호).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보조금**

▹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2026. 6. 26.> 결과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

> ※ **“내항화물운송사업자”란?**
>
> -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 ※ 이하에서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유류세 보조금은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2조제3호 참조).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대상

▪ 경유를 공급받은 선박을 운항선박명세서 상에 등재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선박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1년 미만 단기 용선(傭船)된 경우에는 용선한 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제1항).

▪ 유류세 보조금은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Blending)유를 포함하되, 함유된 경유량에 한정함]에만 지급됩니다(「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4조제1항).

▹ 경유가 포함된 석유제품이라 하더라도 경유 이외의 유류로 분류되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를 말한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해운법」 제4조제2항).

▹ 경유를 구매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해운법」 제25조에 따라 등록 외 사업구역 일시운송신고 후 외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경유 중 유류세를 환급받은 부분은 유류세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해운법」 제4조제3항).

유류세 보조금의 청구 방법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제2항)

-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명세서
-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 세금계산서
-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적자료 등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로 확인되지 않는 운항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만 해당함)
-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BDR)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등록·신고한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

※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다음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 취소, 해당 선박의 감선 조치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박의 운항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운법」 제41조의3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1. 석유판매업자 또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등”이라 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로 운항한 거리 또는 연료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4. 내항화물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해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5.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6. 실제 주유받은 유종(油種)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7. 유류세 보조금의 청구와 관련된 관계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행위
8.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유류세 환급분을 포함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

3.1.2. 유류세의 감면 등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및 금액

▪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유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받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1항).

감면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에 대해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2항).

▪ 이 경우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 매월 공급한 경유의 수량과 유류공급명세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세액 환급·공제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7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1서식 및 별지 제69호의11서식 부표).

감면 방법

▪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를 공급한 달의 공급량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정유회사별 출하량을 대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별 공급량을 기준으로 감면되는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8조제1항).

▪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를 공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위에 따라 산출된 유류세감면액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8조제2항).

> ※ 부정 감면 시 제재
>
> -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해당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3항).
>
> 1.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 2. 위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 석유판매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함)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 ※ “석유판매업자”란?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제1항).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제9호 및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감면 방법

▪ 석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거나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

▹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면세유류공급명세서(「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부정 감면 시 제재

- 석유판매업자가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해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제1항).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위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석유판매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3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2. 직전 2 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간

4. 농·축산·임·어업용 기계 관련 유류세 지원

4.1. 농·축산업 등에 대한 유류세 감면

4.1.1. 농업·축산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농업·축산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및 범위

▪ 다음의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함)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 농민이 농업·축산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 ※ **“농민”이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1호)**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하며, 농산물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됨)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포함)
>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함)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17호).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	
1. 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이앙기 4. 바인더 5. 콤바인 6. 곡물건조기 7. 주행형 탈곡기 8. 예도형 예취기 9. 동력중경제초기 10. 동력수확기 11. 농산물 건조기 12. 관리기 13. 정식기 14. 농업용 난방기(온실, 비닐하우스, 축사에서 사용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버섯, 종자·묘목재배 및 「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및 곤충류 사육용 난방기와 노지에서 사용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이상저온, 서리 등으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난방기를 말함.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함) 15. 동력절단기 16. 농업용 방제기 17. 농업용 양수기 18. 예취기	19. 탈곡기 20. 동력배토기 21. 비료살포기 22.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3. 농산물 결속기 24.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25. 농산물 세척기 26. 동력혈굴기 27. 동력구절기 28.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29.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0. 동력파종기 31. 농선 32. 잔디 깎는 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만 해당함) 33. 녹차채엽기 34. 버섯재배소독기 35. 농업용 무인 항공기 36. 농업용 로더(4톤 미만) 37. 동력제초기 38.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함) 39. 농업용 굴착기(1톤 미만) 40. 화식(火食) 사료용 사료배합기 41. 농업용 지게차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농업기계의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유류의 사용을 위한 신고

▪ 농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2년마다 농업기계의 보유 현황과 경작사실 등을 거주지 또는 경작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을 포함)가 소재한 지역조합에 신고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2항 및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4조제1항).

▪ 농업기계의 취득·양도 또는 농민의 사망, 농업·축산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 다음의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인 농업기계는 1년마다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2).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 농업기계

1. 농업용 트랙터
2. 이앙기
3. 콤바인
4. 농업용 난방기(노지용 · 비닐하우스용 · 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것만 해당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함)
5.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인 것만 해당함)
6.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함)

면세유류의 구입

▪ 농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 ※ **"면세유류 구입카드"란?**
>
> 농민이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농민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2조제1항).

다음의 경우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면세유의 사용 금지

▪ 농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민(그 농민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0항 본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와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제11항에 따라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0항 단서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제10항).

- 천재지변
- 농민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농민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농민이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축산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제1항).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위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2항).

1. 농민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거나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4.2. 임업·어업 등에 대한 유류세 감면

4.2.1. 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및 범위

▪ 다음의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함)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 임업인이 임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임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 ※ **"임업인"이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2호)**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 1. 개인
>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이하 "임업기계"라 함)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3,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별표 1).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

1. 임업용 동력기계톱
2. 임업용 동력천공기
3. 임업용 윈치
4. 임업용 동력집재기
5. 목재파쇄기
6. 톱밥제조기
7. 자동지타기
8. 동력상하차기
9. 동력임내차
10. 타워야더
11.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임업기계의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유류의 사용을 위한 신고

▪ 임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2년마다 임업기계의 보유 현황과 영림경영 사실을 관할 산림조합에 신고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2항 및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5조).

▪ 임업기계의 취득·양도 또는 임업인의 사망, 임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면세유류의 사용 방법

▪ 임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산림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 ※ **"면세유류 구입권"이란?**
>
> 임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을 말합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및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10조).

면세유류의 구입

▪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는 산림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해당 연도 내에서 그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2조제1항).

> ※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
> 임업인이 면세유류 구입권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임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제1항).
>
>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 2. 위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 임업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업인(그 임업인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0항).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권과 그 면세유류 구입권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2항).
>
> 1. 임업인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산림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권을 발급받거나 임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
> 가.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권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
> 나. 가.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임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권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4.2.2. 어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어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및 범위

▪ 다음의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함)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 **“어민”이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3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개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4. 어업주업법인

▪ 면세유류 공급대상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이하 “어업기계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별표 4 및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별표 1).

면세유류 공급대상 어업기계

-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함)
- 어업용 경운기
- 어업용 트랙터
- 어업용 크레인
- 패류선별기
- 어망 세척기

면세유류 공급대상 선박 및 시설

-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
- 나잠어업(裸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
-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로서 다음의 시설

√ 김, 가시파래 건조시설
√ 멸치 자숙(煮熟)·건조시설
√ 미역, 다시마 및 톳 자숙·건조시설
√ 오징어 건조시설
√ 새우 자숙·건조시설
√ 패류 자숙시설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용 시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업용 시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용 시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용 시설
√ 양식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 해삼 자숙·건조시설
√ 청각 건조시설

-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어민 소유의 선박(「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

※ 다음의 선박으로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선박

※ 다음의 시설로서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사용되는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으로 한정)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시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어업기계의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유류의 사용을 위한 신고

▪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2년마다 어업기계등의 보유현황 등을 주소지 또는 시설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2항 및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3조).

▪ 어업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어민의 사망, 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인 어업기계는 1년마다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4).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 어업기계

1.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함)
2. 어업용 경운기
3. 어업용 트랙터

면세유류의 사용 방법

▪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말합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교부받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내수면 어업·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을 신고한 어민

   나. 직전 연도에 면세유(「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직영하는 주유소 또는 그 조합과 공급대행계약이 체결된 주유소가 공급한 면세유에 한정)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

2. 어민(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출고지시서(「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별지 제4호서식)

면세유류의 구입

▪ 어민은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유류공급카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포함)를 유류공급조합에 제시하여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를 다음의 기일 내에 급유소, 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2조제5항).

1.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僻地)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2.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 내수면어업 선박·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2조제1항).

※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어민이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제1항).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위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어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어민(그 어민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0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와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2항).

1. 어민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